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발의자	폐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남환 의원 외 10명	1

(2015. 9.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8월 25일(화)
- 제 출 자 : 백남환 의원 외 10명

###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화)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 동(同) 조례안은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당 안건 심사 제척·기피·회피 및 위탁기간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상황의 평가를 실시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 주요내용 >

-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실시(안 제4조제1항)
- 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복지, 문화, 교육, 취업지원, 교통, 청소, 경비 등) 신설(안 제4조의2)
- 다.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 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 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위원회 위원 해촉규정을 둠(안 제7조)
- 마.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바. 구청장은 위탁기간 연장 시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상황의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8조)
- 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안 제13조의2)

## [검토의견]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의 행정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행정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외 116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종전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다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이를 개선하고자 구청장은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종전 총사업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비에서 모든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대 실시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내용을 복지, 문화, 교육, 취업지원, 교통, 청소, 경비 등을 신설함

**안 제4조제3항**은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전에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 위원회 위원해촉규정을 둠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함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위탁기간 연장 시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상황의 평가를 실시하고 연장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저촉됨이 없고, 2015.8.26.~ 8.3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음.
- 현재 우리 구 민간위탁사업은 117개소로 사업규모나 사업금액이 각각 다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의 사례를 보더라도 관내에 51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마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민간위탁 사업 종류 및 관계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을 각각하고 있는 등 통일성이 없으며, 당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처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및 재위탁 할 때에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써 개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부분을 제외한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 시 마다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해야만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 조례개정이 될 것임.
- 관계 법규 및 타 자치구와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 위탁 사업대상은 117개 사업에 약 279억 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민간 위탁 사업대상 및 민간위탁금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5년도 마포구의회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회기일정이 총 8회/ 97일로 계획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업 계약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해 보면 한 회기에 약 5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 회의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민간위탁 계약 만료 기간과 구의회 회기와 맞추어 구의회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신년도 상임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시 일괄보고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함.
- 또한 동일한 수탁업체가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수탁을 원하는 타 업체 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결정되었더라도 구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는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민간위탁을 잘 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양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21.]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조례

2015.6월

구분	서울시 및 자치구 현황	
조례 제정	1개	서울시(2014.5)
	23개	강남구(2009.12), 강북구(2014.8), 강서구(2012.7) 관악구(2013.8), 광진구(2009.4), 구로구(2012.10) 금천구(2009.12), 노원구(2011.4), 도봉구(2013.11) 서대문구(2013.11), 서초구(2013.5), 성동구(2013.11) 성북구(2013.3), 송파구(2013.3), 양천구(2009.7) 영등포구(2013.12), 용산구(2012.2), 은평구(2011.9) 종로구(2011.12), 중구(2011.7), 동작구(2015.2) 동대문구(2015.4), 마포구(2008.12)
조례 미제정	2개	강동구, 중랑구

##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비 1억원 미만 : 마포구, ○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 : 송파구
-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 : 노원구

연번	자치구	민간위탁사업 심사대상										
1	마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gt; 일부개정 : 민간위탁 사업 전부로 확대 -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 (단위 : 개)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계</th> <th>1억원 미만</th> <th>1억원 이상</th> <th>5억원 이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17</td> <td>85</td> <td>18</td> <td>14</td> <td></td> </tr> </tbody> </table>	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비 고	117	85	18	14	
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비 고								
117	85	18	14									
2	송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초 민간위탁사업</li> <li>2.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 연간 <b>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b></li> <li>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ul>										
3	노원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li> <li>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척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li> <li>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b>위탁비용 5억원 이상의 사무</b>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 기관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li> </ol>										

# 2015년 마포구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비고
	계		27,892,142	
1	공보담당관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	374,850	
2	총무과	청사 유지관리	77,415	
3	문화관광과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110,000	
4		광홍당 운영 및 관리	170,000	
5		문화재 보존관리	39,200	
6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145,000	
7	생활체육과	마포구민체육센터건립	810,000	
8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721,298	
9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62,300	
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100,000	
11		서울형특화산업(디자인출판)진흥계획	224,894	
12		동물보호 관리	122,630	
13	일자리진흥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35,110	
14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812,067	
15		장애인 활동 지원	5,666,411	
16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5,000	
17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254,033	
18		장애인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지원 사업	418,526	
19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	12,964	
20	가정복지과	장난감대여점 운영지원	136,863	
21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37,312	
22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328,663	
2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72,765	
24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300,000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비고
25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70,000	
26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3,700	
27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517,529	
28		작은도서관 운영	450,868	
29	교육청소년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188,672	
30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8,000	
31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지원	13,800	
3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550,000	
33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00,000	
34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사업	2,407,200	
35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4,923,298	
36		폐기물 처리비	4,129,248	
37		깨끗한 마포가꾸기	1,020,782	
38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312,000	
39	지역보건과	통합건강증진사업	10,000	
40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538,506	
41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20,460	
42		정신보건사업	582,298	
43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8,480	